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회의정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1	조계원의원 등 18인	'25.6.11.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5.9.17.)
	2210743	조계원의원 등 18인	'25.6.12.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5.9.17.)
	2210832	이기현의원 등 10인	'25.6.13.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5.9.1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9. 18.)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20조의4 신설).

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제78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라.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사실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안 제33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파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배포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3조의3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결과에”를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결과에”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중대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 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3항에”를 “제33조의2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 제20조의4, 제35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제14조의2(결격사유) 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 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u> <u>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u> <u>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u> <u>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u>

	<u>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 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 야 한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u>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u> <u>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 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 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 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 조사) ① 테마파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인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 조사) ① ----- ----- ----- ----- ----- -----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즉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
사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 중대
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
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
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 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테마파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9의2. (생략) <u><신설></u> 10. ~ 20. (생략) ② ~ ⑦ (생략)	<u>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0.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78조(보고·검사) ① . ② (생략)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78조(보고·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
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
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
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
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
사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
계공무원은-----

-----.

⑥ 제3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
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3조의2제3항에</u> 따른 사용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u>제33조의2제6항에</u> ----- -----
---	-------------------------------------